

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[별표 2]

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

전문인력(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)

| 경영 분야   | 기술 분야   |
|---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2.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3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</li> <li>4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</li> <li>5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</li> <li>6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</li> <li>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/ol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</li> <li>3.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4.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5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</li> <li>6.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사람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</li> <li>나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</li> <li>다. 국·공립 연구기관</li> </ol> </li> <li>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/ol> |